

## 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(지역주도형R&D) 지원계획 공고

시·도간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「2019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(지역주도형R&D)」의 지원내용을 안내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,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9년 5월 2일  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## □ 사업목적

- 시·도간 자율협력으로 구성된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### □ 지원분야

- 시·도간 구성된 14개 중 10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 과제

산업	협력프로젝트(10개)	광역협력권	
		주관시도	참여시도
바이오헬스	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	강원	대전
	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	충남	세종
스마트·친환경선박	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	부산	전남
	LNG 병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	경남	울산
에너지신산업	에너지·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	대전	강원
전기·자율차	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·고안전 차량부품개발	전북	광주, 부산
	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(협력/편의)부품 및 시스템 개발	울산	경북, 세종
첨단신소재	금속/고분자/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·차세대 소재부품 개발	전남	경남
	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	경북	대구, 울산
	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	세종	경남, 충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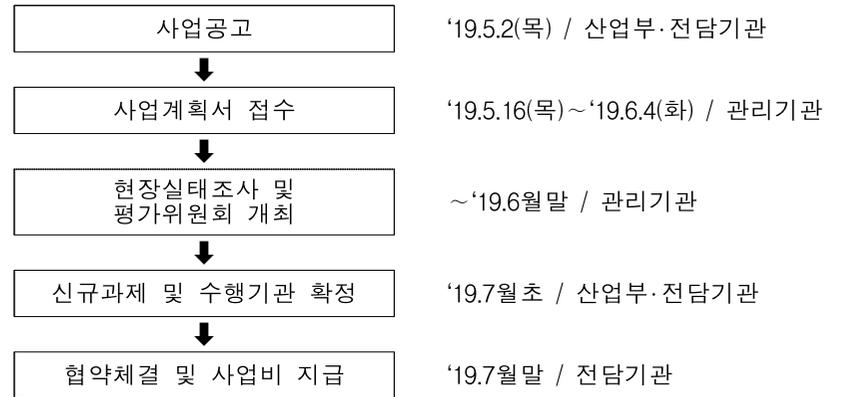
### □ 지원 규모 및 기간

- '19년 신규지원 예산 : 지방비 약 41억원(과제당 2억원 이상/년)
- 총 지원기간 : 총 2년(21개월, 연차별 협약) 이내

구분	총 지원기간		당해연도 지원기간
기술개발	최대 21개월	'19.7~'21.3	'19.7~'20.6(12개월)

\*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

### □ 추진일정



- \* 온라인 접수기간 : '19. 5.16(목) 09:00 ~ 6.3(월) 18:00까지
- \* 신청서류 제출기간 : '19. 5.16(목) 09:00 ~ 6.4(화) 18:00까지
- \*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\* 신청서류는 온·오프라인 모두 제출해야 최종 접수 완료

## 1 지원 내용

### 1 지원개요

구분	세부내용
지원규모	지방비 약 41억원 (과제당 연 2억~4억원 이내)
사업기간	최대 21개월 이내 (연차별협약)
주관기관 자격조건	주관기업은 해당 시·도에 소재하는 중소·중견기업(☑ 지원규모' 참조)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(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) 보유기업
추진방식	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 구성
기술료	징수 (정액 또는 경상기술료)

### 2 지원대상 :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(TRL 6~8단계)

\* 단,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

**<고용창출조건>**

○ **국비지원액 2억원 당(이내) 1명 이상 신규채용 및 참여기업 출연금 합계액 5억원 당 1명 이상 청년고용 의무화**

- (참여인력 채용)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
- (참여인력 이외 채용)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

※ **참고**

- \* 채용 후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
- \* 청년(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) 고용은 참여인력으로서 '참여기업' 총 출연금(국비) 합계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함
- \* 사업 신청 시 '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', 과제정산 시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 제출
- \*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
- \* 인건비(현물 포함)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37% 이상 편성하여야 함

**3 공모방식 : 자유공모**

-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

**4 지원규모 : 지방비 약 41억원**

- 과제당 지원 규모 : 연 2억원 ~ 4억원 이내
- \* 시도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

**< 시도별 지원 규모 >**

(단위 : 백만원)

시도	협력프로젝트	지원 규모
부산	(주관)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	609.6
	(협력)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·고안전 차량부품개발	
울산	(주관)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(협력/편의)부품 및 시스템 개발	856.9
	(협력)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	
세종	(주관)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	574.6
	(협력)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	
강원	(주관) 고강도·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	750.0
	(협력)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(협력/편의)부품 및 시스템 개발	
전남	(주관)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	482.7
	(협력) 에너지·위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	
경북	(주관) 금속/고분자/세라믹분야 고기능·친환경·차세대 소재부품 개발	797.0
	(협력)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	
합계		4,070.8

**5 추진체계 : 지역의 중소·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(기관)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되,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**

**< 추진체계도 예시 >**



**6 신청자격**

- (주관기관) 해당 시·도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(본사, 공장)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
- \* (근거)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
- (참여기관) 해당 시·도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·후방 기업, 대학·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등
- (기타조건) 주관기관은 사업비(지방비 기준) 중 50%이상 계상하여야함

**7 사업비 부담 비율 :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**

구분	지방비	민간부담금	민간부담금 중 현금
중소기업	해당기업 사업비의 67% 이하	해당기업 사업비의 33% 이상	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% 이상
중견기업	해당기업 사업비의 50% 이하	해당기업 사업비의 50% 이상	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% 이상
대기업	해당기업 사업비의 33% 이하	해당기업 사업비의 67% 이상	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% 이상
기타	해당기관 사업비의 100% 이하	해당기관 사업비의 0% 이상	필요시 부담

- \*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(산업부 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”)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해당기업 사업비의 80% 이하로 지원

**8 기술료 징수**

- 과제 종료(조기종료 포함)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, 보통,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(사용한 지방비에 대해서만)를 징수

○ 기술료 징수방식

-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9 성과활용기간

- 연차점검 결과 ‘중단(성실, 불성실)’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‘불성실 수행’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
  - \*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1 평가기준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제품개발 계획 (35)	제품개발의 필요성	○ 개발대상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	10
	개발목표의 명확성	○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(5) ○ 기술개발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(5)	10
	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	○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(5) ○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(5)	10
	협력산업과의 부합성	○ 해당 협력산업(프로젝트)과 기술개발 내용 간 부합성(5)	5
사업추진 체계 (20)	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	○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(5) ○ 수행기관 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(5) ○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(5)	15
	연계협력의 구체성	○ 협력성과 지표 구성 및 협력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	5
사업화 전략 및 성과 (40)	개발제품의 사업화 전략	○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(10) ○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(5)	15
	고용효과	○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고용 확대·유지 가능성(10)	10
	지역경제 기여도	○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(국내매출, 수출) 향상 가능성(10) ○ 수입대체효과, 협력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(5)	15
사업비 (5)	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○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○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	5

2 평가방법

- 접수과제의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
-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, 협력프로젝트별로 평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
  - \*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,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

3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(RCMS) 적용 대상 사업임
  - \* RCMS :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(<http://www.rcms.go.kr>)
-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(e-tube) 대상 사업임
  - \* e-tube : 산업부의 R&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·활용·관리 통합 관리시스템 (<http://www.etube.re.kr>)
- 수행기관이 3,00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
-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,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(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,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)
  - \* 한계기업 :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
  - \* 최종평가 결과 ‘혁신성과(조기종료(혁신성과 포함))’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
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

-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%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
-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-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“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”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
-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「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,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 [별표2]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
  - \*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(신규 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,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,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)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.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.
  - \*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
  - \* 창업초기 중소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)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
  - \* 중소·중견기업이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기본채용 청년인력(5억원 당 1명) 및 제30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(미리 계획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당해연도 수행기간부터 현금 집행 가능)의 인건비. 타 용도로 변경(전용) 불가
  - \*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·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.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「사업비요령」 별표 제1호에 따르되,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.

- \*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 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)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
- \*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(신규과제는 신청시,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 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)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
- \*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(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~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)로 근무하는 중소·중견기업 소속 여성 연구원의 인건비
- \*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·중견기업이 해당 두뇌 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
- \*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,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
- \*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·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% 이내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
- 사업비 편성은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」 제28조,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
  -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특허전략 수립 컨설팅 비용 의무 계상
  - \* 기준 금액은 특허청 IP R&D 사업기준 준용하며, 특허전문가 활용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불가
  -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,000만원 이상 (부가가치세 포함)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
-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8조(사업비 계상)에 의거하여 평가 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,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 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(현물 제외)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

-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(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('19.1.17)) [별표3-2]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[별표3-3]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·감점을 적용함
  - \*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
  - \*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'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·확인서' 참조
- 1) '최근 3년 이내 '혁신성과(조기종료(혁신성과)포함)'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
- 2) '여성 총괄책임자' 또는 '여성참여연구원 20% 이상'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,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
- 3)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
  -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(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)
  -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
  -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'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'을 받은 후 해당 과제에 대해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(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)에 등록된 경우
- 4) '성과활용평가'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(KIAT, KEIT, KETEP의 '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'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)
- 5)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
  - 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(기업)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
  - 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(기업)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
- 6)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

### 3

### 사전 지원 제외 대상

-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
-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  - \* 기 지원 과제라도 “중단(성실, 불성실)”이나 “불성실수행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
-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 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- ④ 참여제한 여부
  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
    - \*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
- ⑤ 동시수행 과제수
  -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
    - \* 단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

주관기관 유형	정상기업	한계기업
중견기업	5	4
중소기업	3	2

\* 한계기업 :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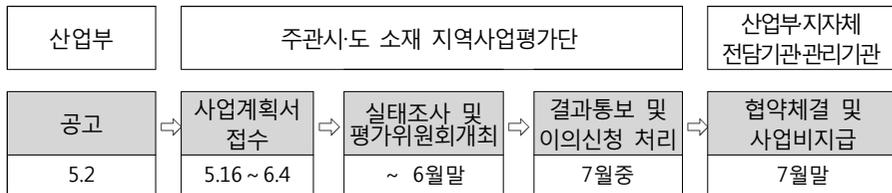
\* 최종평가 결과 '혁신성과(조기종료(혁신성과 포함))'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

○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(세부 주관책임자 포함)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\*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
⑥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(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('19.1.17.))」 제20조 및 [별표2]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

#### 4 절차 및 일정



\*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

\* **사업계획서 접수**의 경우, 온·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

####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##### 1 신청기간

○ 온라인 접수기간 : '19. 5. 16(목) 09:00 ~ '19. 6. 3(월) 18:00까지

○ 신청서류 제출기간 : '19. 5. 16(목) 09:00 ~ '19. 6. 4(화) 18:00까지

##### 2 신청방법

○ 온라인 접수(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) → 신청서류 제출(방문 제출)

○ 온라인 접수처 : <http://www.k-pass.kr>

-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[<http://www.k-pass.kr>] 참조

\* **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(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)**

\*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'완료 및 제출'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

\* 마감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(단, 18시 이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최종제출 가능)

\*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(접수번호 부여)하지 않은 과제는 오프라인 신청서류 접수 불가

\*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·허위로 작성한 경우,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\*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

○ 온라인 접수 문의처 : 02-6009-4374~4375, 4390

○ 신청서(양식) 교부 : 사업계획서 양식, 지역별 지원계획,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홈페이지(<http://www.kiat.or.kr>)에서 다운로드

○ 신청서류 제출처 : 주관 시·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

\*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6

관련 법령

☞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
 ☞ 과제 공고기간 중,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, 개정된 법·규정에 따름

□ 지원근거

번호	관련법령	
1	국가균형발전특별법	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2	산업기술혁신촉진법	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

□ 관련규정 (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)

번호	관련규정	
1	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18호(2019.1.17.)
2	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	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(2019.1.17.)
3	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	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2호(2019.1.17.)
4	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228호(2018.12.13.)
5	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229호(2018.12.13.)
6	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88호(2018.4.30.)
7	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,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262호(2015.12.21.)
8	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80호(2018.4.30.)

7

접수 및 문의처

1 사업설명회 일정

지역	협력프로젝트	일시	장소	문의전화
부산	(주관)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(협력)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·고안전 차량부품개발	2019.5.10. (금), 14:00~	부산TP 엄궁단지 114호	051-315-9245~7
울산	(주관)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(협력/편의)부품 및 시스템 개발 (협력)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(협력) LNG 병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	2019.5.14. (화), 14:00~	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	052-248-5763, 5767
세종	(주관) 고강도·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(협력)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(협력/편의)부품 및 시스템 개발 (협력)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	2019.5.14. (화), 14:00~	세종S8플라자 9층 회의실	041-415-2166, 2168
강원	(주관)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(협력) 에너지·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	2019.5.10. (금), 14:00~	강원대학교 보듬관 B1 대회의실	033-258-2682
전남	(주관) 금속/고분자/세라믹분야 고기능·친환경·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(협력)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	2019.5.14. (화), 15:00~	전남TP 신소재기술산업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	061-399-7526
경북	(주관)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(협력)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(협력/편의)부품 및 시스템 개발	2019.5.15. (수), 15:00~	(재)경북IT 융합산업기술원 5층 세미나실	053-818-9503, 9521, 9513

\* 세종지역 프로젝트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안내

2 접수 및 문의처 : 광역협력권별 주관시·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

협력프로젝트 (주관 시도 기준)	관리기관	문의전화	주소
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	강원지역사업평가단	033-258-2682	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,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
LNG 병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	경남지역사업평가단	055-259-3410, 3407	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
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	경북지역사업평가단	053-818-9503, 9513, 9521	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
에너지·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	대전지역사업평가단	042-864-4273, 4275	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
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	부산지역사업평가단	051-315-9245, 9246, 9247	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-16 1층, 112호
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(협력/편의)부품 및 시스템 개발	울산지역사업평가단	052-248-5763, 5767	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62-11, 201호 (교동,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)
금속/고분자/세라믹분야 고기능·친환경·차세대 소재부품 개발	전남지역사업평가단	061-399-7526	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-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
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·고안전 차량부품개발	전북지역사업평가단	063-278-9736, 9740	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
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	충남지역사업평가단	041-415-2166, 2168	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(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) ※ 2019. 5. 31.(금) 이후 사무실 이전 (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(불당동), 6층)
고강도·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			

\* 세종 소재 기업·기관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

③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

- 주관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(044-203-4427, 4428)
- 전담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(02-6009-3761, 3766, 3767)

